

전문물리치료사의 역할과 자세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물리치료전공

김 성 학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박 래 준

Laws of Expert Physiotherapist Role and Pose

Kim, Seong-Hak, P.T., M.S.

*Major in Physical Therapy, Dept. of Rehabilit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Taegu University*

Park, Rae-Joon, P.T., Ph.D.

*Dep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Rehabilitation Science, Taegu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presents should be raised forward in expert of physiotherapist islands in our country. And genuine specialist's standard is what and ethicality as specialist has and discussed focus how build. For front, independence general observation of physiotherapy may have to make standing possess correct qualification and ability there with getting worse subtraction which consist necessarily.

Also, service mind and composure give this writing to all laws of physiotherapist desiring to be laws of physiotherapist who is.

서론

현재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영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타의 전문직종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힘을 쏟고 있으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물리치료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물리치료사는 이들의 활동과는 동떨어져서 무관심하고 무능력하며 무감각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본다. 과연 물리치료사는 전문가인으로서의 능력과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생활을 계속 영위해야 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은 심한 회의를 느낄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일부는 자부심을 가지고 현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물리치료사는 과연 전문가인가 하는 문제와 전문가라면 전문 영역으로서의 기준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문물리치료사라는 타이틀은 어떠한 자격으로 얻을 수 있고, 전문물리치료사로서의 유지를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각종 전문물리치료사의 자격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임상에서의 일정한 경력은 물론이고 자격을 위한 연수, 논문제출과 함께 엄격한 시험을 통해서 선발되어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논문심사와 강의 경력 그리고 일정한 연수를 통해서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APTA 인터넷 사이트). 아직 우리나라의 현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처음 시행 할 때에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면 전문물리치료사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각 학회에서 시행하고 있고 협회에서 준비중인 안에는 이러한 기대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식의 자격남발은 현재의 생활과 별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저자의 기대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대한 물리치료사 협회 인터넷 사이트, 대한 정형물리치료학회 인터넷 사이트). 많은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처음부터 확실한 조건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또다시 시행착오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능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가장 물리치료사의 소망사항인 단독개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반대 세력도 더 이상 의의를 제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위치도 진정한 전문인으로 대우도 받고 능력도 발휘되리라 본다.

본론

먼저 물리치료사의 전문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속성 모델(trait model)이다. 전문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으로 한 직업이 다른 직업과 구분되는 일정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전문직이 갖고 있는 속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Greenwood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5가지 속성이다. (1) 전문적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수행하는 기술의 바탕이 되는 체계적인 이론을 갖추어야 한다. (2) 전문적 권위가 있어야 한다. (3) 전문직은 사회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특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4) 전문직은 전문직 자체의 윤리강령을 갖고 있어야 한다. (5) 전문직은 전문직 고유의 문화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전문직은 일정한 속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관점은 그것이 너무 이상적인 형태(ideal-type)의 전문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직업들의 전문직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의 많은 직업들은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속성으로 전문직 여부를 가리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상기와 같은 속성을 가졌다고 해서 전문직이라 하고, 갖지 않고 있다고 해서 비전문직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과정 모델(process model)이다. 속성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이 모델이다. 이 관점에서는 어떤 직업들의 전문직 여부는 전문성 정도의 연속성 상태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직업의 발전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단계에 도달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전문직화의 정도를 판단한다.

Wilensky에 의하면, 직업의 전문직화 과정에는 다음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직업을 수행하는 데 유급의 전일제 활동(full-time-paid-activity)이 필요하게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교육을 받아야 가능해지며, 세 번째 단계에는 그 직업의 전국적 조직체가 만들어져야 하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 직업에서 수행하는 고유하고 핵심적인 임무(core task)가 명확히 나타나야 하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과거에 그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과 새로운 교육과 자격으로 그 일을 하는 사

람들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여섯 번째는 유사한 인근 직업들과의 사이에 갈등이 첨예해지고, 일곱 번째는 그 직업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면허, 등록, 자격제도 등)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그 직업의 윤리강령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과정론에 따르면 서로 다른 직업들은 상기의 전문직화의 단계상의 서로 다른 위치에 있고, 이 위치에 따라 전문직화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많은 직업들은 그 직업의 속성상 반드시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 과정론의 한계가 있다.

셋째, 권력 모델(power model)이다. 지금까지의 두 가지 관점에서는 전문직에 대한 일정한 객관적인 정의를 기반한 데 반해, 권력 모델에서는 전문직에 대한 일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어떤 직업이든 사회에서 특정 영역에서 특정한 일을 하는데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으면 전문직이 된다고 본다.

어떤 직업이 특정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여 전문직이 되는 것은 그 직업이 그 영역에서 타 직업에 비해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예를 들어, 기술의 뛰어난), 단순히 그 직업이 그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직업이 전문직이 되느냐하는 것은 해당 영역에서 얼마나 기능을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 그 영역에서의 독점적인 역할 수행 권한을 사회적으로 배당 받게 하는 정치적 권력관계에서 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남세진과 조홍식, 1995).

이상의 3가지 모델 가운데, 속성 모델이나 과정 모델에 의해 물리치료사의 전문성 여부를 보면, 물리치료사는 환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돌보아주는데 필요한 여러 다양하고 잡다한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고유한 이론체계의 구축 정도가 약하며, 수행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져 다른 직업과의 기능수행에서의 차별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즉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해서 전문성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의 기능과 역할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이 강해 다른 전문직(의사나 변호사)보다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물리치료사의 전문가 여부는 다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권력 모델의 관점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물리치료사들이 독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나 기능을 사회로부터 부여받으면 물리치료사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물리치료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가 라는 점을 찾아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기능은 개인의 자원, 능력, 기술, 지식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사회에 의존하는 환자들의 의존성에 대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전체(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통제를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의존성에 대한 사회통제란 개인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통제일 뿐만 아니라 역기능적인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전문적으로 발전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의존성의 통제라는 사회적 기능을 물리치료사들이 얼마나 독점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것은 다른 직업들과의 정치적, 사회적 권력관계에서의 승리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물리치료사는 전문적 역할 수행을 위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물리치료사가 바람직한 전문적 역할 수행을 위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전문직에도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윤리가치, 지식, 기술의 3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초지식은 관련분야의 지식과 일반적인 교양으로 구성되는 보존의 의무 등을 요

구한다.

첫째, 기본적 가치와 관련하여 전문직이 갖고 있는 가치전제는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 및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대한 신념 등이 기본이다.

둘째, 지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식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전문가의 실질적인 개입활동을 다루는 실천지식(practice knowledge)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며, 둘째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에 관련되는 인간체계의 발달, 성장, 기능 및 역기능 등에 관한 기초지식이다.

셋째, 기술과 관련하여 지식과 가치의 기초를 토대로 할 때에, 기술의 요소는 두 가지의 예비적 용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사용할 방법을 선택하는 기술, 둘째, 실제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기술 등이다.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를 다루는 모든 전문직은 실천에 옮기기 전에 면접하는 방법과 같은 기초적인 기술을 반드시 습득해야 한다. 실천의 시작단계에서 필요한 기초기술로 1) 기본원조 기술(basic helping skills), 2) 관여기술(engagement skills), 3) 관찰 기술(observation skills), 4) 커뮤니케이션 기술(communication skills)등을 들 수 있다(조홍식 2002).

윤리란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인의 윤리는 인간관계에서 그 사회의 도덕률과 가치에 기초해서 행하고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전문가의 윤리는 어떤 특수한 역할의 입장, 즉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는데 수반하는 특수한 의무를 성문화한 것이다.

전문가 윤리는 사회윤리와 같은 근거에서 나왔으나 중요한 세부에 들어가면 다를 수 있다. 우선 순위, 강조점, 집중성, 적용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사회적 윤리와 전문적 윤리 모두 평등의 원칙을 강조하지만 전문적 윤리는 클라이언트 이익을 모든 다른 사람의 이익에 우선한다. 일반윤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선 순위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주어져야 한다”에 더욱 강조점을 둬으로써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전문직도 지역사회 일반적 윤리기준에 총체적으로 위배되는 윤리적 원칙을 세울 수는 없다(김용일등, 1995).

물리치료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물리치료사의 윤리는 전문인으로서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며, 이것들이 바로 전문적 행동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강령은 전문직의 단체나 기관이 ‘전문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성문화하여 정한 것’을 의미하며, 물리치료사 윤리강령은 모든 물리치료 전문가의 가치가 그 기본전제가 되는 것이다.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전문물리치료사제도에서 앞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진정한 전문가의 기준은 무엇이고 전문인으로서의 윤리성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초점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앞으로 반드시 물리치료의 자립개설은 이루어진다는 자심감을 가지고 거기에 격이 맞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봉사정신과 여유가 있는 물리치료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모든 물리치료사들에 바친다.

참고문헌

1. 김용일, 조홍식, 김연옥. 사회사업실천론. 서울 : 나남출판사, (1995)
2. 남세진, 조홍식. 한국사회복지론. 서울 : 나남출판사, (1995)..
3. 대한 물리치료사협회 인터넷 사이트
4. 대한 정형물리치료학회 인터넷 사이트
5. APTA 인터넷 사이트